

의안번호	2218335
의 퇴 인	이인영의원
회 답 일	2026.8.21.
추 계 번호	26D2134

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2조의2(금융소비자단체)	－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금융소비자가 조직한 단체(이하 “금융소비자단체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함(제1항) 1. 금융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시책에 대한 건 2. 금융소비자 문제에 관한 조사·연구 3. 금융소비자의 교육 4. 금융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한 상담·정보제공 5. 법률에 따른 표준약관 개정 요청 6. 그 밖에 금융소비자 관련 문제 해결에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－금융소비자 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는 등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음(제3항) －국가는 등록금융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육성·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(제7항)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32조의2(금융소비자단체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금융소비자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(안 제32조의2)

- 개정안에 따라 금융소비자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금융소비자단체의 설립

및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경우 국가의 보조금 지급으로 인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- 다만, 개정안에 따른 등록금융소비자단체의 수, 해당 단체가 수행할 사업 내용 및 단체에 대한 지원 금액을 현시점에서 예측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동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- 참고로 유사사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‘소비자권익증진 지원’ 사업의 최근 3개년 간 민간단체 활동 지원 예산은 다음과 같음

[표 1] 민간단체 활동 지원 예산: 2024~2026년

(단위: 백만원)

내역사업	2024	2025	2026
소비환경개선	243	243	150
상품비교정보 생산 지원	380	380	380
자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지원	189	189	189
소비자교육 실행	402	402	402
합계	1,234	1,234	1,221

자료: 공정거래위원회 확정예산 사업설명자료

- 따라서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박은비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은비	02-6788-4831	ebpark@assembly.go.kr